



직업안정법 시행령 [시행 2023. 3. 28.] [대통령령 제 33131호, 2022. 12. 27. 일부개정]

기존 직업안정법령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(신문, 잡지,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·구직 정보 등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)의 구인광고 게재행위와 관련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구인자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. 이 때문에 그간 직업정보매체들이 불법적인 내용의 구인광고를 여과 없이 게재하는 등(예컨대 보이 스피싱 조직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‘○○법률사무소’ 등 마치 정상사업장인양 위장하여 게재)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습니다.

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구인자의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,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구인자의 구인광고는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.

관련구성원

기영석

변호사

02-316-4021

ysgi@shinkim.com

박성기

변호사

02-316-4280

skipark@shinkim.com

이세리

변호사

02-316-4034

srlee@shinkim.com

김종수

변호사

02-316-1678

jsokim@shinkim.com

윤혜영

변호사

02-316-4491

hyyun@shinkim.com

송우용

변호사

02-316-1696

wysong@shinkim.com

김종현

변호사

02-316-1721

johkim@shinkim.com

Copyright SHIN & KIM LLC. All rights reserved.